

원주시지역 국민임대주택(매입) 입주자 모집

(백운2차 · 문막이화 · 흥업경동)

- **선착순 동호지정(선계약 후검증), 입주자격 조건 완화** -
[현장신청만 가능, 인터넷/모바일신청 불가]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주요내용

1.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자

	일반조건	완화조건
주택 기준	무주택	무주택(단, 소형·저가주택이거나,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적용	적용 배제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적용 배제
자동차 기준	3,683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40㎡이하 신청가능	40㎡초과 신청가능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원주시 연접지역 :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 금회 모집공고의 상세 입주자격요건은 **공고문[4. 신청자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선착순 동호지정(선계약 후검증) *접수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이후 추첨으로 순번 재배부

- 금회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 가능합니다.(계약금 50만원)

3. 입주자격 완화 시 재계약 안내

- 금회 자격완화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나, 2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최초 계약의 임대조건 및 입주자격요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8.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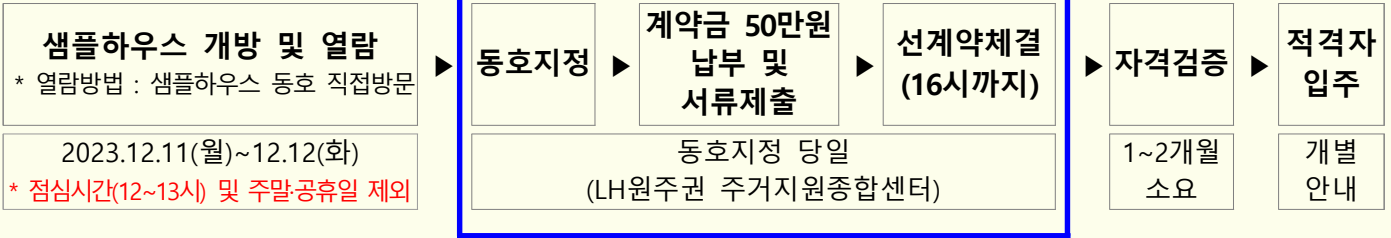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2.07(목)이며, 신청접수일(계약체결일)이 입주 자격 심사(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국민임대주택(매입)으로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지역(본인 소재지)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이후 추첨으로 순번 재배부
- 금회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기존 임차인의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미지참시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선착순 동호 지정일에 신청서류 구비 및 계약금(50만원) 계좌이체 납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방문바랍니다. (서류미제출 및 신청 당일 오후 4시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계약금 미납부된 경우, 신청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함으로 유의)

■ 접수일정 및 장소

단지명	접수일정	접수장소	비고
흥업경동	'23.12.13(수) ~ 모집완료시 10:00 ~ 16:00	원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점심시간 (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백운2차, 문막이화	'23.12.14(목) ~ 모집완료시 10:00 ~ 16:00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동호지정 당일 **10시 이전에 도착한 분들은 방문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순번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예: 오전 7시 도착자, 오전 9시 도착자 모두 10시에 동일하게 번호 추첨)
-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무응답 시 다음 추첨을 진행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며,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합니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50만원) 입금 및 신청서류 제출이 당일 16:00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당일 16:00까지 미입금 및 서류 미제출시 지정된 동호에 대한 계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계약방법 : 동호지정 후 계약금 50만원 입금 및 신청서류 제출 후 선계약 체결(선계약 후검증)

- 신청(계약)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불가)
 - ① 계약금 50만원 : 현장에서 안내하는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이체 가능하도록 준비(현금 수납 불가)
 - ②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6.신청서류] 참조(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지참(공고문[6.신청서류] 참조)

■ 입주안내 :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서 계약이 유지되며 추후 입주 관련 개별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약 1개월 예정)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본 계약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공사의 입주안내 통보 이후 단순변심 등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주택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안내 [8.유의사항] 참조)

■ **샘플하우스 운영**(샘플하우스는 공급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단지명	주택형	샘플하우스	열람 안내
백운2차	36㎡	201동 408호	* 열람기간 : 2023.12.11(월)~12.12(화)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열람기간 내 해당아파트 샘플 동호수 직접 방문
	42㎡	201동 404호	
문막이화	27㎡	1동 610호	
	39㎡	1동 1303호	
	42㎡	1동 1406호	
	45㎡	1동 1005호	
흥업경동	45㎡	1동 1401호	
	32㎡	101동 1303호	
	39㎡	101동 804호	

- ※ 샘플하우스는 열람기간 내에만 열람 가능하며, 기간 외 열람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계약 이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샘플하우스는 단지 및 주택형 확인을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내부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샘플하우스는 퇴거 후 일부 보수가 진행된 상태이며, 개별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정도에 따라 도배·장판, 청소 상태 등 시설물 일부가 샘플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샘플하우스 운영하지 않는 단지 및 평형의 경우,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각 단지의 평형별 평면도 및 내부사진 등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센터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센터		신청문의 전화번호
	센터명	주소	
백운2차	LH 원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1600-1004 ☎ 1670-0003
문막이화			
흥업경동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백운2차	강원 원주시 적동1길 31 (태장동 2252)	3개동 231호
문막이화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31 (동화리 1530-2)	1개동 141호
흥업경동	강원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3 (흥업리 86)	2개동 298호

- 금회 공급주택은 국민임대주택(매입)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며, 단지여건 등 주택 내외 환경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예 : 승강기 유무, KTX 고속철, 송전탑, 군시설 등)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주택명	주택형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공급호수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준공)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매입 호수	모집 대상		
				기타 공용	주차장					
백운2차	36형	36.1800	12.7630	2.4170	0.0000	51.3600	63	24	복도식/개별	'12.01 (96.7월)
	42형	42.9300	15.1440	2.8680	0.0000	30.9420	83	33	복도식/개별	
문막이화	27	27.9600	11.6090	3.2200	0.0000	42.7890	21	2	복도식/개별	'08.09 (94.119월)
	39	31.9500	13.2656	3.2200	0.0000	48.4356	30	9	복도식/개별	
	42	39.3400	16.3340	3.3600	0.0000	59.0340	30	5	복도식/개별	
	45	42.6480	17.7075	3.3600	0.0000	63.7155	32	3	복도식/개별	
	45	45.2720	18.7968	7.1400	0.0000	71.2088	25	7	복도식/개별	
흥업경동	32	32.4380	11.5330	4.6950	6.8380	54.7000	9	1	복도식/개별	'08.07 (00.04월)
	39	39.6980	14.1140	5.7450	8.3690	66.9420	9	3	복도식/개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별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샷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샷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첨부된 모집 대상 동호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동호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주택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백운2차	36형	7,092,000	500,000	6,592,000	70,920	12,157,000	19,249,000	0
	42형	9,455,000	500,000	8,955,000	88,650	15,196,000	24,651,000	0
문막이화	27형	3,717,000	500,000	3,217,000	87,640	15,024,000	18,741,000	0
	39형	9,089,000	500,000	8,589,000	96,790	16,591,000	25,680,000	0
	42형	10,668,000	500,000	10,168,000	112,490	19,283,000	29,951,000	0
	45형	12,093,000	500,000	11,593,000	124,270	21,303,000	33,396,000	0
	45형	12,326,000	500,000	11,826,000	128,190	21,974,000	34,300,000	0
흥업경동	32형	5,969,000	500,000	5,469,000	68,780	11,790,000	17,759,000	0
	39형	9,864,000	500,000	9,364,000	83,060	14,238,000	24,102,000	0

-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상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부여 주택형에 한함)하며,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 이율 7%),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격기준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p>무주택</p>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붙임1' 참조) (단, 소형·저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p>* 원주시 연접지역 :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p>																	
<p>세대구성원</p>	<p>■ 세대구성원의 범위(입주자격 검증,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268 622 1485 969"> <thead> <tr> <th>세대구성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신청자 본인</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68 1025 1485 1417"> <tr> <td>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d rowspan="3">*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td> </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독세대주 - 면적제한 배제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규정상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하지만,

- 금회 모집 공고에서는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40㎡초과 국민임대주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할 경우, 1회차 갱신 계약까지는 계속 거주 가능하나(최대 4년 거주), 2회차 갱신 계약시에도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 불가하며,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예비입주자 신청서 및 퇴거유예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용 40㎡이하로 동호 변경해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자 최후순위로 등록하여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총자산보유 기준 - 적용 배제 (자동차는 완화하지 않고 기준금액 적용)

금회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최초 계약 및 1회차 갱신 계약시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소 4년간 동일조건 거주)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1회 초과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 초과시 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재계약 거절 유예 2회 적용 이후는 퇴거대상이 됩니다.(소득 할증 비율에 상관없이 퇴거대상)

5. 모집일정 및 장소

단지명	샘플하우스 개방	신청접수(서류제출) 및 동호지정 선계약 체결	자격검증 및 소명	본계약 체결 및 입주
흥업경동	2023.12.11(월) ~ 12.12(화) 10:00 ~ 16:00	2023.12.13(수) ~ 모집완료시 10:00 ~ 16:00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자격검증 후 개별안내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백운2차		2023.12.14(목) ~ 모집완료시 10:00 ~ 16:00		
문막이화				
장소	해당 아파트 개방세대 (첨부파일 참고)	LH 원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 주택단지별 신청접수 개시일이 상이하오니 접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일 오전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 순위로서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하며, 순번을 배정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다음 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합니다.
- ※ 모집대상은 신청접수(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은 샘플하우스 개방, 신청접수(서류제출) 및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12.0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점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공통 제출(구비) 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의 도장	• 서명으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신청 접수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집 및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입주자격 완화 협약서	• 신청 접수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집 및 신청·접수가 거부됨		
선계약 후검증 협약서	• 신청 접수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집 및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대리 신청 시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LH 원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1670-0003
교통편	6, 7, 13, 16, 100, 100-1번 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차
약 도	

7. 계약안내

- **계약방법** : 동호지정 후 신청서류 제출 및 계약금 50만원(현장수납 불가) 입금 후 선계약 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신청시간 내(10:00~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자동으로 신청 무효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 처리됩니다.
 - **신청(계약)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불가)**
 - ① **계약금 50만원** : 현장에서 안내하는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이체 가능하도록 준비(현금 수납 불가)
 - ②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6.신청서류] 참조(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지참(공고문[6.신청서류] 참조)
- **입주안내**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자격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한 1~2개월 예정)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공사의 적격여부 통보 이후 단순변심 등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갱신 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입주자격요건</th> <th>1회차 재계약</th> <th>2회차 재계약</th> </tr> </thead> <tbody> <tr> <td>무주택요건</td> <td>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허용)</td> <td>공고 전 취득한 주택(소형·저가주택)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td> <td>종전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td> </tr> <tr> <td>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요건</td> <td>배제</td> <td>가능</td> <td>단독세대주의 경우, 재계약 불가 (전용 40㎡이하로 동호변경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시 퇴거 대상)</td> </tr> <tr> <td>소득·총자산 요건</td> <td>배제</td> <td>가능</td> <td>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할 때에도 재계약 허용</td> </tr> </tbody> </table>	구분	최초 입주자격요건	1회차 재계약	2회차 재계약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허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소형·저가주택)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종전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요건	배제	가능	단독세대주의 경우, 재계약 불가 (전용 40㎡이하로 동호변경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시 퇴거 대상)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가능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할 때에도 재계약 허용		
구분	최초 입주자격요건	1회차 재계약	2회차 재계약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허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소형·저가주택)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종전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요건	배제	가능	단독세대주의 경우, 재계약 불가 (전용 40㎡이하로 동호변경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시 퇴거 대상)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가능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할 때에도 재계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는(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신청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자동차 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총자산 요건은 재계약 거절 유예 2회 적용 이후 3회차 재계약 시 갱신 자격요건 초과할 경우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2회차 재계약 시 40㎡이하 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서 및 퇴거유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기준</td> <td>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td> </tr> <tr> <td>총자산 기준</td> <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td> </tr> <tr> <td>자동차 기준</td> <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조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구분	조건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현 시점(모집공고일 2023.05.03) 기준으로 향후 갱신 계약을 위한 자격 검증 시 갱신 시점에 따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따릅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비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동호별 전환 가능한 보증금이 상이하므로 공고 문 임대조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접수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60㎡이하 공시가액 8천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주택소유,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계약)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모집호수의 계약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p>신청방법 및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매입)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p>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여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및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1600-1004)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관련 사항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안내 이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지 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p>입주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입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기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열쇠 수령일부터 부과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입주 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부과 (잔금 미납 시에는 연체료 또한 부과)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미입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직권해지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5호」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위약금</p>	<p>[주택단지별 임대차계약 해지 시 위약금]</p> <table border="1" data-bbox="255 1456 1460 1892"> <thead> <tr> <th>주택명</th> <th>주택형(m²)</th> <th>위약금(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백운2차</td> <td>36</td> <td>106,270</td> </tr> <tr> <td>42</td> <td>130,490</td> </tr> <tr> <td rowspan="5">문막이화</td> <td>27</td> <td>114,640</td> </tr> <tr> <td>39</td> <td>122,240</td> </tr> <tr> <td>42</td> <td>132,940</td> </tr> <tr> <td>45</td> <td>162,190</td> </tr> <tr> <td>45</td> <td>179,960</td> </tr> <tr> <td rowspan="2">흥업경동</td> <td>32</td> <td>97,750</td> </tr> <tr> <td>39</td> <td>124,820</td> </tr> </tbody> </table> <p>※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주택명	주택형(m ²)	위약금(원)	백운2차	36	106,270	42	130,490	문막이화	27	114,640	39	122,240	42	132,940	45	162,190	45	179,960	흥업경동	32	97,750	39	124,820
주택명	주택형(m ²)	위약금(원)																							
백운2차	36	106,270																							
	42	130,490																							
문막이화	27	114,640																							
	39	122,240																							
	42	132,940																							
	45	162,190																							
	45	179,960																							
흥업경동	32	97,750																							
	39	124,820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7

 **강원지사 원주권 주거지원종합센터**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擱,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

- 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및 주택	<p>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지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주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가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지확인(임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동 확약서의 내용은 ‘ . . .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 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재계약 요건 요약 -

구분	최초 입주자격요건	1회차 재계약	2회차 재계약
무주택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형·저가주택 허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소형·저가주택)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종전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요건	배제	가능	단독세대주의 경우, 재계약 불가 (전용 40㎡이하로 동호변경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시 퇴거 대상)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가능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할 때에도 재계약 허용

0. (공통)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부금을 완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소득·총자산 배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완화) 입주자모집공고 전 취득한 주택(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며, 종전 주택(소형·저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면적배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초과 주택에 거주 제한 되어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자동차) 자동차 기준금액 미충족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약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계약동호 : () 임대주택 () 동 ()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선계약 후검증 확약서

본인은 () 임대주택 ()동 ()호 계약자로서
동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1. 향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가
동 계약을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제(해지) 시
LH는 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
하며,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 관련 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
된 위약금을 LH공사가 징수함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LH 공사로부터 최종 입주가 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주택에 대한 이사 일정 등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며,

입주가 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 임의로 이사 일정 등을 세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차질,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확약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